仲裁硏究, 第 31 卷 第 1 號
2021년 3월 1일 발행, pp. 55~81
http://dx.doi.org/10.16998/jas.2021.31.1.55

논문접수일 2021. 02. 15.
심사수정일 2021. 02. 28.
게재확정일 2021. 03. 01.

# 국제중재판정의 지연이자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Delay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김준기**
Joongi Kim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지연이자와 관련한 주요 쟁점
Ⅲ. 지연이자의 종류
Ⅳ. 이자의 준거법
Ⅴ. 한국의 실무현황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소촉법, 대한상사중재원

* 본 논문 연구에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자 3분, 이호원 원장님과 임솔지 양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jg@yonsei.ac.kr

# Ⅰ. 들어가며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은 전 세계를 무대로 이뤄지고 있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나 투자는 국경을 초월한다. 국제적인 교역이나 투자가 많아질수록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상대국 법원보다는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제도가 정착된 지도 오래되었다. 한국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은 세계 주요 중재기관, 중재인, 중재지 및 주요 준거법 등 국제중재 관련한 국제중재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규칙을 별도로 제정한 지도 10년 이상이 지났고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따로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제중재사건에서 지연이자[1]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국제중재사건 당사자 상당수는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지연이자를 국내중재사건 내지는 소송사건과 같은 법리로 접근하고 법정이자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청구한다. 실제로 한국 관련한 국제중재사건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자를 막연하게 청구하기도 하며 아예 청구를 안 하는 당사자도 상당히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지연이자는 주요 쟁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자못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이 대륙법계에서 두드러진다.

하지만 국제중재에서는 분쟁금액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계약 기간은 물론 중재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때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자는 원금보다도 많아질 수도 있고 분쟁규모가 조 단위인 대형 국제중재사건에서는 이자가 몇 천억 원은 물론 몇 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의 사건인 유코스(Yukos) 중재에서는 피신청인인 러시아가 지급해야 할 판정금이 500억 달러(55조 원)[2]에 달하였는데 추가로 이자가 53.5억 달러(5조 8850억 원)에 이르렀다.[3] 현재 국제상사중재사건은 물론이고 한국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중재사건에서도 어떠한 이율을 적용해야 할지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계약 상당수는 지연이자는 물론 이자 자체를 언급하지

1) 본 논문에서는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연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국제중재에서는 "delay interest"와 "interest"를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많다. 지연이자(delay interest)은 엄격한 의미는 이자는 아니고 원래 손해배상금인데 법원은 지연손해금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권영준, "법정이율 변동제", 「비교사법」, 제20권 제1호, 2013, pp.51-90.

2) 독자의 편의를 위해 미화는 1달러에 1,100원으로 계산하여 병기했다.

3) Mark Kantor, "Fifty Billion Dollars; The Yukos Damages Awards", The Journal of Dama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 No.1, 2015, p.131.

않는다. 나아가 국제중재에서는 지연이자에 관한 관행도 확립되어 있지 않아 판정부마다 제각각 다른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제중재판정의 지연이자를 비교법적으로 살핀 연구는 국내에서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중재사건에서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지연이자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 III장에서는 국제중재에서 사용하는 이자의 종류를 살피고, IV장에서는 다양한 계산 방법을 조사한다. V장에서는 이자에 관한 준거법을 조사하고 VI장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그동안에 지연이자를 어떻게 판정했는지를 정리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결과적으로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는 물론이고 한국 당사자와 국제중재사건을 담당하는 법률대리인, 중재인 등이 분쟁이 발생하고 중재절차가 개시되고 나서 지연이자를 얼마나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Ⅱ. 지연이자와 관련한 주요 쟁점

국제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금전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하면 지연이자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한다.[4]

중재판정부가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금전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적절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채권자의 손해를 제대로 배상할 수 있다는 점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례로 이자를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 판정부가 과도한 이자를 명하면 승인과 집행단계에서 인정이 안 될 수 있다.[5]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지연이자를 청구해야만 판정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많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자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6] 반면 이탈리아 같은 국가는 중재판정부가 이자를 명할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있

4) 반대신청이 있으면 반대신청 피신청인이 중재판정채무자가 될 것이다.

5) 이슬람법을 따르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엄격히 따르는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이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명목으로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고 한다. Nayla Comair-Obeid, “Recovery of Damages for Breach of an Obligation of Payment” in Yves Derains and Richard Kreindler (eds), Evaluation of Dama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Pari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6, p.133; 이무원, “이슬람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6권, 제1호, 1996, p.236, 237, 246. 프랑스에서는 이율이 과도한 판정을 부분 취소하면서 이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한 판례가 있다. CA Paris, June 9, 1983, Iro-Holding v. Sétilex, 1983 REV. ARB. 497; Fouchard Gaillard Goldma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Gaillard and Savage (eds); Jan 1999), p.962; 오스트리아도 73% 이자는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집행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Judgment of 26 January 2005, XXX Y.B. Comm. Arb. 421 (Austrian Oberster Gerichtshof) (2005). 적용법과 준거법에 관한 논의는 후술한다.

다고 한다.[7] 따라서, 당사자가 이자를 청구하지 않아도 이자를 명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판정부가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지 않으면 판정금을 지급하기로 명한 이상 판정 후 이자도 명하도록 하고 있다.[8] 한국은 물론 미국도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고 계약에 규정이 없어도 이자를 명한 판정의 집행을 허용한 판례가 있다.[9]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이자 규정을 포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중재판정부는 합의한 대로 이자를 부과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자를 약정한 조항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를 약정한 조항도 포함될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의 국제계약이 약정이율 내지는 지연이자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때 지연이자를 부과할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어떻게 부과할지와 어느 법이나 규칙에 따라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할지 등이 관건이다.

중재법 혹은 중재 관련한 법령에 이자나 지연이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국가가 대부분이다.[10] 미국 연방 중재법, 스위스 국제사법, 프랑스 민사소송법 등이 대표적으로 없으며 국제중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뉴욕주법도 마찬가지다. UNCITRAL 모델중재법에도 없고, 따라서 이를 따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영국 그리고 모델법 국가 중에서는 호주(1991), 홍콩(1997), 아일랜드 (2010), 싱가포르(2012), 말레이시아(2018) 등이 예외적으로 중재법에 이자 조항을 두고 있다.[11] 홍콩은 1997년도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제79조에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판정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12]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드물게 한국도 2016년에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조항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13]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주요 중재기관 중에서 판정부가 지연이자를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없다. 대표적으로 국제분쟁해결센터 국제분쟁해결규칙[14] 제31조, 런던국제중재법원 중재규칙[15] 제26조,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16]

---

6) Judgment of 6 April 1995, Thyssen Stahlunion v. Maaden, 1995 REV. ARB. 448 (Paris Cour d’Appel); Fouchard Gaillard Goldman, p.941와 p.949.

7) Thierry Sénéchal · John Gotanda, “Interest as Damages”,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47, 2009, p.497.

8)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0.3조;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0.6조. 말레이시아는 2018년데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에서 이자 관련한 제20.3조를 동일하게 도입하였다.

9) Gary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 Kluwer, 2004, p.3110, 각주 600.

10)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독립된 중재법이 따로 없고 중재 관련한 법령을 민사소송법에 포함한 국가도 많다.

11) 괄호 안에 숫자는 이자 조항을 추가한 연도이다. 호주 국제중재법, 제25조, 제26조; 홍콩 중재법, 제79조, 제80조, 아일랜드, 중재법 제18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0조,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3.6조.

12) 한국도 2016년에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이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민법과 상법상의 법정이자와 소촉법 등과 함께 후술한다.

13) 모델법을 도입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 구성국이나 관할지역 중에서는 스코틀랜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일랜드, 인도, 뉴질랜드 등 보통법 체계를 따르는 곳이 이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 대륙법 국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 ICD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Rules and Procedures, 2021 (이하 “ICDR 규칙”).

15)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rbitration Rules, 2020 (이하 “LCIA 규칙”).

제32.9조에서는 판정부가 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정부의 권한에 대해 폭넓게, 그리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제 41.6조에 지연이자 근거 규정만 간단하게 마련하고 있다. 반면에 유엔 국제 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17],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18],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19]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등은 이자나 지연이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Ⅲ. 지연이자의 종류

### 1. 중재판정 이전 지연이자(Pre-award interest)와 중재판정 이후 지연이자(Post-award interest)

국제중재사건은 중재신청부터 중재절차가 개시되고 완결될 때까지 적어도 1-2년,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은 손해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중재판정은 피신청인의 위법행위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재절차 기간을 포함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갚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중재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금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결정할 때 흔히 두 단계로 분리하여 중재판정 전의 지연이자와 판정 이후의 지연이자로 구분한다.[20] 중재판정은 피신청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법원의 사실심(事實審) 판결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분리한다.[21]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지급해야 중재판정금을 확정하고 나면 판정 이후 이를 완납할 때까지 지연이자를 부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는 목적은 판정 전 지연이자와 비슷하지만, 지급을 지연시키지 못하게 하는 성격이 더욱 강조된다. 판정 후의 지연이자가 판정 전의 지연이자와 다를 수 있고 판정 후의 지연이자가

16)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rbitration Rules, 2016 (이하 “SIAC 규칙“).
17) UNCITRAL Arbitration Rules, 2013 (이하 ”UNCITRAL 규칙”).
18)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Rules, 2021 (이하 ”ICC 규칙”).
19)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2018 (이하 “HKIAC 규칙”).
20)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소촉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전후로 지연손해금이 분리되는 민사소송법과 대조적이다. 소촉법에 대해서는 V장에서 후술한다.
21) 판정 전 지연이자를 독일어로는 Zins(en)schaden) 또는 Ausgleichszinsen, 불어로는 dommages-intérêts compensatoires 또는 intérêts compensatoires라고 하며 중재판정 이후의 이자는 독일어로 Urteilszinsen, Prozesszinsen 혹은 Zukunftszinsen, 불어로 intérêts moratoires라고 한다. Irmgard Marbo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and Damag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nd ed., Oxford International Arbitration Se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337, p.395.

높을 때가 적지 않다.

영국 중재법, 호주 국제중재법, 홍콩 중재법,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아일랜드 중재법, 말레이시아 중재법, 인도 중재법 등은 판정 전과 후에 지연이자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한국, 뉴질랜드 등은 중재법에 판정 후 지연이자의 지급만 규정한다.[22]

주요 국가나 관할지역 중에 영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등은 중재법에 판정금은 물론 구체적으로 중재와 관련한 비용에 이자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3] 비용에 이자까지 가산할 수 있다고 문언으로 명시한 중재법은 흔하지 않으며 영국과 아일랜드 중재법은 판정 후 비용에 대해서만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24]

주요 중재규칙 중에서는 ICDR 규칙 제34.4조가 판정 전과 후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한 반면 LCIA 규칙 제26.4조와 SIAC 규칙 제32.9조는 판정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기간에 관계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가로 LCIA 규칙 제26.4조는 판정을 이행한 이후는 부과할 수 없다고 종기(終期)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중재판정이 판정 후 지연이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판정 후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 있을지도 국가에 따라 다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판례에 따라,[25]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성문법에 따라 허용한다. 프랑스에서는 당사자가 청구를 했는데도 판정 전 이자만 명하고 이후 이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중재판정에서 민법 제1231-7조[26]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법정이자를 부과한 BAII 판례가 있다.[27]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판정부가 판정 후 이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권한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28] 싱가포르는 국제중재법 제20.3조과 말레이시아는 중재법 제33.6조에서 판정부가 이자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만약 판정금의 지급을 명하고 달리 언급이 없으면 판정 후에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29]

---

22) 영국 중재법, 제 49조; 호주 국제중재법 제25조와 제26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0조; 인도 중재법, 제31.7조; 아일랜드 중재법, 제18조;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3.6조.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제41.6조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중재법 개정 이전에는 말레이시아 최고 법원은 당사자들이 정하지 않으면 판정부는 판정 전 이자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Far East Holdings Bhd & Anor v. Majlis Ugama Islam dan Adat Resam Melayu Pahang and other appeals [2018] 1 MLJ 1.

23)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0.1조

24) 영국중재법 제49.4조, 아일랜드 중재법 제18조.

25) Christopher R. Seppälä, "Post-award interest", Post-hearing Issu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Devin Bray, Heather L. Bray 편저, Juris, 2013.; Cass. Civ. 1st, 30 June 2004, Appeal No. 01-10.269, 01-11.718, Bull. Civ. No. 2004, I 189 p.156, Banque Arabe et Internationale d'Investissement (BAII) v. The Inter-Arab Investment Guarantee Corporation (IAIGC);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p.338.

26) 현재 민법 제1231-7조가 판결 당시에는 개정 전에는 제1153-1조이었다.

27) Seppälä, p.81.

28) 동일한 중재판정문을 벨기에에서도 집행을 시도하면서 판정 후 이자를 청구했으나 벨기에 최고법원은 법정이자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Seppälä, p.81.

29)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독일도 비슷한 판결이 있다. 석광현,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의 외국중재판의 승인 및 집행",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2001, p.352.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승인과 집행하면 그때부터는 일반 자국 판결에 적용하는 법정이자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30]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중재판정을 확인할 때에는 확인한 이후부터는 판정이 법원의 판결에 흡수되어 판정에 판정 후 이자가 없어도 연방법에 따라 판결에 적용하는 이자를 부여한다.[31] 당사자들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32]과 호주[33] 등과 같이 집행법원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고 불허하는 국가도 있다.[34]

## 2. 이자의 기한: 시기(始期)와 종기(終期)[35]

국제중재사건에서는 이자와 관련한 기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해당 준거법이나 중재규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에는 이러한 상세한 규정이 대부분 없다. 따라서 판정 전 이자를 어느 날부터 산출할지도 중재판정부마다 제각각인데 준거법이 대륙법계인지, 보통법계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보통법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준일은 위법행위를 한 날이다. 대륙법계에서는 반면에 중재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삼는 판정부가 많다. 위법행위를 한 날이나 중재신청일 외에 대금청구일, 지급기일, 독촉하거나 이자를 청구한 날 혹은 해지한 날, 손해가 발생한 날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36]

대표적으로 영국은 판정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개시일을 정하는데 명시적인 제한 없이 "사건의 정의(正義)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날로부터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호주 국제중재법 제26.1조에서는 시기(始期)를 청구 원인(cause of action)이 발생한 날 이후부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청구한 시기(始期)보다 이른 시점부터 이자를 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당사자가 청구한 시기(始期)보다 이른 시점부터 이자의 부과를 명한 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37]

---

30) John Gotanda, "Supplemental Damage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3.4, 1988; Nigel Blackaby, N.,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5th ed., 2009, p.532.

31) 28 U.S.C. § 1961; Bayer Cropscience AG v. Dow Agrosciences LLC, 680 Fed App'x 985, 1000 (Fed. Cir. 2017). 미국에서는 중재판정이 연방법원이 아닌 각주에서 확인, 승인 및 집행되기도 한다. Born, p.3108.

32) Walker v. Rowe [2000] 1 Lloyd's Rep 116.

33) Tianjin Jishengtai Investment Consulting Partnership Enterprise v. Huang [2020] FCA 767.

34) 캐나다, 미국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 등은 법원 판결 이후의 이자가 판결 전 이자보다 많다. 권영준 (2013), 각주59.

35) 라틴어로 시기는 *dies a quo,* 종기는 *dies as quem*이며 이 용어를 선호하는 국제중재판정부가 종종 있다.

36) Marboe, pp.379-83; McCollough & Co Inc v Ministry of Post Telegraph and Telephone, 11 Iran–US CTR (1986) 3, para.97.

37) 프랑스에서는 부분 취소한 사례가 있다. CA Paris, June 28, 1988, Total Chine v. E.M.H., 1989 REV. ARB. 328, and J. Pellerin's note. Comp. CA Paris, Apr. 19, 1991, Parfums Stern France v. CFFD, 1991 REV. ARB. 673; Fouchard Gaillard Goldman, p.941.

국제중재사건에서는 판정 전과 후의 지연이자를 달리 정하면 판정한 날까지를 판정 전 지연이자의 종기로 하고 판정 전 지연이자의 종기는 완제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로 판정 후 이자는 판정을 확인하는 판결까지로 정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38] 또한, 판정부가 종기를 완제일까지로 명시해도 집행국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집행판결 이후에 자국 판결에 부과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39]

국제투자중재와 같이 국제법을 적용해야 하는 판정부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40]을 주로 참고한다. 초안 제38.2조에 따르면 "이자는 원금을 지불해야 할 날부터 지급의무를 완수한 날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금을 지불해야 할 날"이 위법행위를 한 날인지, 손해가 발생한 날인지, 손해가 파악된 날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쟁점이 되고 있다.[41]

## 3. 금리의 종류

### (1) 법정금리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이자를 부과해야 할지가 문제다. 당사자 간에 계약에 명시적으로 약정한 이자나 약정지연이자를 두거나 묵시적으로 해석할만한 조항이 있으면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적용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이자를 약정했지만 적용하지 않는 사례로는 예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이자제한법 등을 초과하는 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고, 특히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과할 이율을 명시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원금 등에 부과할 약정이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유추하여 이를 묵시적인 당사자의 합의로 보고 적용할 수도 있으나 신청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지연손해금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42]

당사자 간의 계약에 지연이자 조항을 두지 않으면 국제중재사건 판정부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기관의 중재규칙, 해당 국가 중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또는 일반 법정이율 등을 지연이자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재사건에 적용할 지연이자를 중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가는 흔하지 않다. 또한 일반채무에 적용하는 법정이자 혹은 보통법계처럼 법원의 판결 등에 적용하는 법정이자를 중재사건에도 적용해야 하는지도 일관된 견해가 없다.[43]

---

38) Born, p.3109.
39) Born, p.3111-3112.
40)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41) Marboe, p.375. 수용사건에서는 수용한 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Sergey Ripinsky · Kevin Williams, Damag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8, pp.363-91.
42) Gotanda (2009), pp.502-503.

UNCITRAL 모델중재법(이하 “모델법”)과 이를 따르는 국가는 이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중재법이 대부분 없다.[44] 보통법계가 그나마 이자 조항을 중재법에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법정이자에 관한 조항을 둔 모델법 국가가 일부 있다. 홍콩은 1997년부터, 그리고 싱가포르는 2012년에 국제중재법, 말레이시아는 2018년에 중재법을 각각 개정하면서 비교적 상세한 이자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판정 이후 기간 동안 법정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45] 판정문에 이자의 지급을 명하지 않고 원금의 지급만 명했다면 성문법에 따라 법원 판결에 적용하는 법정이자를 판정 이후부터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46] 따라서,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판정 후에 지급해야 할 원금에 일반 소송의 판결에 적용하는 법정이자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통법계에서는 성문법이나 자국 중재법보다는 판례 등에 따라 법원 판결에 적용하는 법정이자를 유추하여 중재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국가들이 많다. 예를 들어 뉴욕시변호사협회 국제상사분쟁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의 준거법이 뉴욕주법이고 중재지가 모두 뉴욕주이더라도 중재판정부는 뉴욕주 법원이 판결 전에 적용하는 법정이자를 명할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하면서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47] 법정이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법원(法院) 절차에 적용하기 위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뉴욕주 판례도 판정부가 법정이자를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조사되었다.[48]

대륙법 국가 중에서는 중재법에 법정이자는커녕 이자에 관한 조항을 둔 곳을 찾기 힘들다.[49] 대륙법계 판정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실체법적 사항이므로 중재판정부가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법정이자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익숙하다.[50] 당사자 청구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판정 전 이자만 명했다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앞서 살핀 BAII 사건과 같이 집행법원이 판정 후 판정금에 민법상 법정이자를 적용한다.[51]

또한, 주요 중재기관 중에서도 이자를 특정하여 중재규칙에 포함하는 곳은 찾기 힘들다. LCIA 규칙에서는 타 국가의 법원이나 사법기관(legal authority)의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강조하면서 판정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52]

---

43) Grove-Skanska v. Lockheed Aircraft International AG, Award No. 3903 (ICC 1981).

44) 이에 관한 도입여부를 UNCITRAL에서 논의하였다. 이강빈, “국제상사중재 실무상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중재연구, 제9권, 제1호, 1999, pp.129-130.

45) 홍콩 중재법 제80.1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0.3조,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3.6조. 판정 전 이자에 대해서는 (2)목 참조. 지금은 삭제된 1950년도 영국 중재법 제20조에서 비롯된 동일한 조항이다.

46)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0.3조;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3.6조; 홍콩 중재법, 제80조; Robert Merkin · Johanna Hjalmarsson, Singapore Arbitration Legislation: Annotated, 2nd ed., Informa Law, 2016, p.2119.

47)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Committee of the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Award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view of Internatioanl Arbitration, Vol.28 No.1, 2017. p.2.

48) 전게논문; 뉴욕민사소송법, 제5001, 5002, 5004조.

49) 아시아와 유럽 대륙법계 모델법 국가 중에 이자에 관한 조항을 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50) 이자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IV장에서 후술한다.

51) 각주 25주 참조. 유럽 주요 국가 법정이자는 다음 사이트 참조. https://e-justice.europa.eu/content_statutory_interest-404-en.do?clang=en. 접속일 2021.2.27.

따라서, 국제중재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준거법 국가의 성문법을 적용하여 일반 계약이나 소송 등에 부과하는 법정이자를 중재판정에 부과할 이자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 어떤 법정이자를 적용할지도 불분명할 때가 있으며 미국 같은 연방국가는 일례로 연방차원의 법정이자도 없을뿐더러 각 주별로 제각각이다.

### (2) 상업적인 금리와 합당한 금리

보통법계의 영향이 큰 국제상사중재 사건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상업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자를 사용하는 판정부가 많다. 특히 국제투자중재에서는 국제적인 일반원칙이나 국제기준에 따라 이자를 선택하는 판정부가 상당수에 이른다.[53] 이자를 절차법적 사항으로 보는 보통법계 국가들은 상업적인 금리나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중재법에 이자에 관하여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과 호주다. 영국은 우선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판정 전과 후에 이자를 정할 때 단리 혹은 복리, 이자의 기간, 이율, 기산점 등을 "사건의 정의(正義)에 부합하도록"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호주는 이러한 기준도 없다.[54] 당사자들이 정하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판정부에게 "사건의 정의에 부합하는" 금리를 명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판정전 이자는 특별한 정함이 없이 판정부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다.[55]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는 크게 신청인의 입장과 피신청인 입장에서 보는 계산 방법으로 나뉜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위법한 행위 시점부터 채무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보고 그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신청인이 해당 판정금을 위반행위 시점에 받아서 적절한 상업적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운영수익을 고려한 방법, 신청인의 대출이율이나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등을 산출하여 신청인의 자본비용을 통한 방법, 신청인이 해당 판정금을 받지 못해 상응하는 금액을 대여한 조달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방법, 시장의 우대금리를 유추하여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신청인이 소재한 국가에 있는 은행 금리에 기초한 방법이 있고, 영국은행간금리(LIBOR)[56], 미국대출우대금리(US prime rate), 미국 10년 만기 국채 등과 같은 무위험지표금리(risk free interest rate)를 근거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무위험지표금리가 너무 낮다고 평가하여 1-4% 정도의 가산금리

52) LCIA 규칙, 제26.4조.
53)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초안에도 이자에 관한 조항은 없다.
54) 영국 중재법 제49.3조와 제49.4조; 호주 국제중재법 제25조와 제26조.
55) Redfern and Hunter. pp.528-529.
56) LIBOR는 2021년 말에 중단될 예정이다.

(spread)를 추가하기도 한다. 금리의 종류는 확정금리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반면에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강제대출이론(coerced loan theory)"[57]이 널리 주장되고 있다. 위법행위시점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발생했고 그동안 신청인에게 갚지 않고 대신 보유하면서 사용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이론이다. 마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당 판정금을 강제로 대여하였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를 평가하는 이론이다. 특히 판정 후 지연이자는 피신청인이 채무가 확정된 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을 위험이 가시화되는 만큼 피신청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무담보로 조달할 수 있는 대출금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위험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신용평가에 따라 이자율을 산출하므로 무위험지표금리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이외에 해당 계약서의 대금지급이 이뤄지는 결제통화에 따라 통화발행국의 이자율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58] 따라서, 결제통화가 유로이면 유럽은행간금리(EURIBOR)가 적절하고 엔화면 동경은행간금리(TIBOR) 등을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주요 국가 중재법 중에서는 영국은 판정 전과 후에 "사건의 정의(正義)에 부합"하는 이율로, 호주는 "합리적인 이율"로 폭넓은 기준을 마련하여 이자를 정하도록 규정한다.[59] 홍콩 중재법,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말레이시아 중재법은 판정 전 기간 동안 판정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율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60]

주요 중재기관 중에서 LCIA 규칙이 가장 폭넓은 규정을 갖고 있다. 판정문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모든 판정금액에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심지어는 앞서 설명한 대로 어떠한 법원이나 기타 법적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율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까지 명시한다.[61] 판정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ICDR 규칙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율을 판정 전과 후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때 계약서와 준거법을 고려하라고 명시한다.[62]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중재기관 규칙 중에서는 판정부에게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다.[63]

이 밖에 중재기관은 구체적인 이율을 마련하지 않고 판정부가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57) "Forced loan theory"라고도 한다.

58) Born, p.3107.

59) 영국 중재법 제49.3조와 제49.4조; 호주 국제중재법 제25조와 제26조; 미국 연방중재법에는 이자에 관한 조항이 없지만 연방법원에 적용되는 판정 후 금리에 대해서는 국채에 근거한 시장금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8 USC 1961.

60) 홍콩 중재법 제79.1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0조, 말레이시아 중재법, 제33.6조.

61) LCIA 규칙, 제26.4조.("without being bound by rates of interest practised by any state court or other legal authority").

62) ICDR 규칙, 제34.4조는 판정금의 통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통화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계약서에 명시된 통화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63) 대한상자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41.6조.

권한이 있다고만 규정한다. UNCITRAL 규칙, ICC규칙, HKIAC 규칙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등은 이자를 언급한 조항조차 없다.

### (3) 실무 현황

ICC 중재판정부들이 2014부터 2018년까지 내린 180개 판정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81%에 해당하는 145건은 판정 전후에 같은 금리를 명하였다.[64] 특기할 만한 점은 판정 이후 금리가 다르면 판정 이전 금리보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여 판정부의 관행이나 추세를 도출할 수 없었다.

금리를 산출한 근거로는 이자를 청구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45%의 사건에서는 법정금리를 채택하였고, 17%의 사건에서는 약정금리를 선택하였다.[65] 준거법이 대륙법계인지 보통법계인지에 따라 분리한 통계도 주목할 만하다. 준거법이 대륙법계인 사건은 55%가 법정이율, 15%가 약정금리, 11%가 중앙은행 금리, 12%가 합리적인 이율을 부과하였으나, 보통법계에서는 32%가 법정이율, 20%가 약정금리, 19%가 합리적인 이율, 11%가 은행간금리 부과하는 차이를 보였다.[66] 따라서, 준거법이 대륙법계일 때 법정이율을 우선 적용한 사례가 많았고 은행금리를 사용할 때는 중앙은행금리를 선호했으며, 준거법이 보통법계일 때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산출 방법을 채택했고 은행금리를 사용할 때는 은행간금리를 선호했다.

국제투자중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집계되었다.[67] 2016년까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공개된 판정문을 전량 분석한 결과가 있다. 판정 전 이자를 명한 총 60건 중에 23건인 38.3%인 LIBOR나 미국국채와 같은 시장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하였고, 동수의 23건은 가산금리 없는 시장금리를 채택하였으며 나머지 14건인 23.3%에 특정이율을 선택하였다.[68] 시장금리 기준금리를 사용한 46건 중에서는 13건이 미국 국채금리를 사용했고, 27건은 은행간금리를 선택했다.

64) PWC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Damages award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Study of ICC awards”, 2020, p.20.
65) 전게논문, p.20.
66) 전게논문, p.21.
67) James Dow, “The Guide to Dama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Business Research, 3th ed., 2018, pp.301-330. 본 조사에서는 판정 후 이자에 대한 통계가 따로 집계되지 않았다.
68) 전게논문, pp.308-310.

## 3. 단리와 복리

### (1) 복리 관계 법령과 중재규칙

UNCITRAL 모델법과 모델법국가를 포함하여 중재법이나 관련 성문법에 중재판정부가 복리의 지급을 명할 권한이 있는지를 규정한 국가가 많지 않다. 예외적으로 영국은 1996년에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제49.3조에, 모델법 국가 중에서는 아일랜드가 2010년에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제18조에 명시적으로 판정 전과 후에 복리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69] 이와 비교하여 홍콩은 중재법 제79조, 싱가포르는 국제중재법 제20.1조, 말레이시아는 중재법 제30.6조에 명시적으로 판정 전에만, 호주는 중재법 제26조에 판정 후에만 복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보통법계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은 주별로 복리의 허용 여부가 다르고 호주는 거의 모든 주에서 엄격하게 제한한다.[70]

복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에콰도르처럼 법원이나 중재판정부 등은 복리를 지급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한다.[71] 또한, 중재와 무관하게 준거법이 독일법이면 민법 제289조에 따라 지연이자는 복리를 가산할 수 없다.[72]

하지만 복리를 적용한 판정이 나중에 공서양속에 반하여 취소하거나 승인이나 집행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나라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외국 준거법에 따라 복리를 지급한 판정은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73] 스위스, 미국, 인도 등도 비슷한 판례가 있다.[74]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단리를 적용하는 국가나 판정부가 많다.[75] 그럼에도 불구하고 Gotanda는 당사자들이 복리를 명시적으로 약정할 때,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신청인이 복리의 금융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때, 혹은 피신청인이 지체 없이 변제하여 채무를 이행했으면 신청인이 복리를 받았을 것이라고 입증할 때 중재판정부가 복

69) 아일랜드가 2010년 이전에는 국내중재에 관한 이자조항만 있었다. 영국 법원은 성문법에 따라 복리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형평과선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v. Islington London Borough Council [1996] AC 669.

70) John Gotanda, "Compound Interest in International Disputes", Oxford U Comparative L Forum 1, 2004, Retrieved January 31, 2020, from ouclf.law.ox.ac.uk, pp.8-9, 12; 미시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켄터키주, 콜로라도주 등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자의 복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Redfern and Hunter, p.529.

71) 에콰도르 헌법 제244조, 민법 제2140조.

72) BGB, 제289조; BGB 제248조; 몇가지 예외도 있다. Gotanda (2004), p.7.

73) OLG Hamburg, decision of 26 January 1989, 6 U 71/88, juris.; 스위스도 유사한 판례가 있다. Swiss Fed. Trib., Jan. 9, 1995, Inter Maritime Management S.A. v. Russin et Vecchi, 10 INT'L ARB. REP. D1, D6 (Sept. 1995); XXII Y.B. COM. ARB. 789 (1997).

74) Inter Maritime Management S.A. v. Russin & Vecchi, Federal Tribunal, Switzerland, 9 January 1995, XXII Y.B. Com. Arb. 789 (1997); Gotanda (2004), 각주214.

75) 자세한 사항 아래 (3)목 참조. Teppei Mogi, Aiko Hosokawa and Wakako Inaba, Japan Delos Guide to Arbitration Places, 2020, p.11; 뉴욕주 General Obligations Law, 제5-527조.

리를 판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76]

중재기관 중에서는 ICDR, LCIA, SIAC 중재규칙 등에서 판정부가 단리는 물론 복리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7] 그 외에 주요 중재기관은 단리나 복리를 규정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

### (2) 복리의 계산 방법

일반적인 단리와 달리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해도 이를 어떤 주기로 계산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복리는 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 복리기간(rests)에 따라 산출 주기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간에 따라 최종 이자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쟁점이다.

주요 국가 중재법에 복리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는 판정 전과 후에, 홍콩,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은 판정 전에 판정부에게 이자를 지급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복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주요 중재규칙 중에서는 복리기간을 문언으로 표시한 곳은 없지만 이를 제한하지 않으니 판정부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투자중재에서는 판정 후 이자는 복리기간을 판정 전 이자보다 짧게 하거나 판정 전에는 단리이고 후에는 복리로 하여 판정 후 이자 비중을 크게 한 사례들이 있다.[78]

### (3) 복리 적용의 실무 현황

실제 2014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ICC 중재판정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판정 중에서 79%는 판정 전 이자를 단리를 적용했으며 74%는 판정 후 이자도 단리를 적용했다.[79] 법정이율을 적용할 때 단리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대륙법계의 영향과 약정이율도 단리로 계산하라는 사례가 많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특기할 점은 이러한 규정이나 약정 없이 ICC 판정부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때도 단리를 대부분 채택했다.[80]

대조적으로 국제투자중재는 최근 경향이 복리 부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81] 2016년까

76) Gotanda (2004), VI장.
77) ICDR 규칙, 제34.4조, LCIA 규칙, 제26.4조, SIAC 규칙, 제32.9조.
78) Marboe, pp.402-403.
79) PWC, p.20.
80) 전게논문.
81)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and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6/11, Award, October 5, 2012, p.312 ((과거에 단리를 지급하는 관행이 바뀐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중재판정 복리이자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복리이자의 지급을 명하면 보통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관행은 Chorzów 사건원칙에 부합한다."); Gemplus, SA, et

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한 공개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총 60건 중에 80%인 48건이 복리지급을 명하였다.[82] 또한, 2009년 이후 35건 중에서는 33건이, 2013년도 이후 16건 중에서는 모든 사건이 복리를 적용하라고 명하여 최근에 지급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83] 또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조사한 다른 결과에 따르면 파악이 안 되는 판정문을 제외하고 85%는 복리를, 10%는 단리를 명했다고 한다.[84]

## Ⅳ. 이자의 준거법

국제중제사건에서 지연이자와 관련한 준거법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때가 흔치 않다. 이자를 약정하였다면 이를 참고할 텐데 이 또한 없을 때가 많다. 이자가 실체법에 속한다고 보는 국가도 있고, 절차법에 속한다고 보는 곳도 있어 문제는 더 난해해진다.[85] 미국의 예만 보아도 문제의 복잡성을 알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법원 판결 전 이자에 관한 규칙은 실체법적인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주별로는 법원의 입장이 다양하게 나뉘고 있으며, 주 중에서는 실체법인지 절차법인지 확정하지 않은 곳도 있을 정도다.[86] 같은 보통법계인 영국은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판정 전 이자를 명할 수 있는 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부분은 실체법을 적용하나, 이자의 기간이나 이율 등은 절차법을 적용하고 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87]

이러한 배경 하에 지연이자와 관련한 준거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판정부가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준거법과 이자를 부과하는 기준에 관한 준거법이다.[88] 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준거법은 또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중재합의의 준거법과 중재지

---

al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s ARB(AF)/04/3 and ARB (AF)/04/4), Award, June 16, 2010, pp.16-26.

82) Dow, p.310.

83) 전게논문, p.309.

84) PWC, p.20.

85) Born, p.3106; ABC International Bank PLC et autres v. Société BAII recouvrement, Judgment of 30 June 2004, 2004 Rev. arb. 738 (French Cour de cassation civ. 1e)(판정부가 판정 이후 지연을 언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준거법은 집행국가의 절차법으로 판시).

86) Dustin K. Palmer, “Should Prejudgment Interest Be a Matter of Procedural or Substantive Law in Choice-of-Law Disputes?”,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69 No.2, 2002, p.706, p.713.

87) Martin Hunter · Volker Triebel, “Award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ome Observations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Laws of England and Germany”,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6 No.1, 1989, p.13.

88) John Gotanda, “Award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0 No.1, 1996, p.52; Born, p.3104.

법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나뉜다.[89].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중재합의로 판정부의 권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에 Born과 같이 중재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중재지가 판정부의 판정권한(competence-competence) 등 권한의 속성과 범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90]

국제중재에서 이자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하여 어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할지는 난제 중의 난제로 그 "이론적 복잡성은 형이상학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91] 이율, 기간, 통화 등을 어떠한 준거법에 따라 산출할지에 대해 국제중재사건 판정부마다 달리 판단하고 어떠한 관행이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92] 계약의 준거법이나 중재지법 외에 판정금액 통화발행국의 준거법 혹은 일반적인 국제원칙이나 기준 등이 채택될 수도 있다.[93]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없으면, 저촉규범 혹은 국제사법의 중개가 필요한지 아니면 생략할지,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지 등도 관건이다.[94] 어느 국가의 국제사법이나 저촉규범을 적용해야 할지부터가 불분명할 수 있다.[95] 중재지 국가, 중재인의 본국, 판정이 집행될 국가, 분쟁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 국제조약에 따른 국가, 중재기관에 따른 국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96]

예를 들어 계약에 약정되어 있지 않고 저촉규범의 중개 없이 중재지법에 따라 판단하는 예를 들 수 있다. 중재지는 영국이고 계약의 준거법이 독일이면 판정 전 이자를 지급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독일 둘 다 실체법으로 보므로 독일법을 적용하겠으나 이자 산출은 중재지인 영국에서는 절차법이므로 영국법을 적용할 것이다.[97] 반면에 중재지가 독일이고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이라면 판정 전 이자를 지급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독일 둘 다 실체법이라 보므로 영국법을 적용하겠으나 이자 산출은 중재지인 독일에서는 실체법을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보고 영국법을 적용할 것이다.[98] 비록 영국이 이자 산출을 절차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차치한다. 보통법계 국가 중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있으나 영국, 홍콩, 스코틀랜드, 버뮤다 등에서는 이자의 계산은 절차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재지법을 적용한다.[99]

---

89) Redfern and Hunter, p.528; Born, pp.3104-3105.
90) Born, p.3106.
91) Born, p.3106; Marboe, p.340-341; Gotanda(1996), p.51.
92) Gotanda (1996), p.52.
93) Born, p.3106. 중재절차의 준거법은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중재지법일 텐데 중재절차의 준거법이 중재지가 아닐 때는 따로 약정할 때가 드물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기 힘들다.
94) 한국 중재법 제29조는 모델법과는 달리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의 중개 없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석광현, "중재법의 개정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2012, p.568.
95) Hunter · Triebel, p.7-11; Gotanda (1996), p.50, 51-52; Born, pp.3105-3107.
96) Gotanda (1996), pp.51-52.
97) Hunter · Triebel, p.13.
98) Hunter · Triebel, p.19.
99) Redfern and Hunter, p.528.

Gotanda에 따르면 저촉규범 중개 없이 UNIDROIT 원칙 같은 일반원칙이나 공정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등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00] 또한, 이자나 복리 등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나중에 집행을 구할 가능성이 있으면 준거법을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할지도 관건이 될 수 있다. Redfern and Hunter는 판정부가 집행국의 집행가능성까지 예상하여 고려할 수 없지만 한쪽 당사자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01]

Born 등은 판정금액 통화의 발행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법정이자를 적용해야 할 때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다.[102] 법정이자는 한 국가의 금융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한 국가의 통화로 판정금을 정하고 다른 국가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심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103]

국제상사중재 실무에서는 분쟁의 실체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판정부가 그나마 많다고 한다.[104] 중재지와 무관하게 보통법계나 대륙법계 판정부 중에 상당한 예가 있다.[105] 결과적으로 국제상사중재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준거법을 적용하지만, 국제투자중재에서는 은행간금리나 미국 국채와 같은 시장금리와 대여금리를 기준으로 정할 때가 많다.[106]

# Ⅴ. 한국의 실무현황

## 1. 중재법, 판례 및 중재규칙

한국 중재판정부도 당사자들이 약정한 이자율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397조를 유추적용하여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약정이율이나 약정지연이율을 부과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약정이율이나 약정지연이율을 규정한 계약은 흔치 않다. 따라서 중재규칙과 중재법을 의율한 후에 해당 법정이자율을 참작한다.

---

100) Gotanda (2004), p.14; 저촉규범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Gotanda(1996), pp.51-53 참조.

101) Redfern and Hunter, p.531.

102) Hunter · Triebel, p.14; Born, p.3107; 국자투자중재에서 이 점을 강조한 판정은 Gemplus SA & Ors v United Mexican States & Talsud SA v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 ARB(AF)/04/3, Award dated 16 June 2010, para.16-32.

103) J. Gillis Wetter, “Interest as an Element of Damages in the Arbitral Process”,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986, p.22 (Lars Hjerner, Awarding Interest in Swedish Arbitration, Swedish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pp.29-37 (1985) 인용).

104) Born, p.3106-3017; Wetter, p.20; Steven H. Reisberg · Kristin M. Pauley, An Arbitrator’s Authority to Award Interest on an Award until “Date of Paym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Vol.16, No.1, 2013, p.26 (Reisber · Pauley는 분쟁의 실체법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105) Born, p.3106, 각주 579.

106) Senechal · Gotanda, p.507.

한국이 중재법을 2016년에 개정하면서 지연이자에 관한 조항을 처음으로 추가하여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모델중재법에도 없는 조항을 주요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추가하면서 중재판정부가 지연이자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과거에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 판정부가 지연이자를 적용한 불확실한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중재법 제34조의3은 '지연이자'라는 표제 하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이율을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원칙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정의 존부" 혹은 구체적으로 이율을 얼마로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107] 이는 판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어느 정도 이율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고 전해진다.[108] 지연이자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변제기로부터 판정 시까지와 판정 후부터 완제할 때까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다.[109]

대법원은 1990년 판례에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관행"이라고 인정하였다.[110] 그러나, 이는 중재지가 외국인 국제중재사건을 두고 한 평가라고 봐야 한다. 또한, 동일한 대법원 판결에서 계약의 실체법에 따라 법정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111] 그 후에 다른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을 실체법의 문제로 재확인하였다.[112]

외국중재판정부가 당시 한국 이자제한법 제한 범위 내에 있는 연 25%의 지연이자를 적용한 것은 문제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113] 또한, 이율에 대한 "자세한 이유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114]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정한 계약이 아닌 이상 복리 대신 단리로 법정이자를 부과하고 있다.[115]

지연이자를 주문에 포함하지 않은 외국 중재판정을 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국 법원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은 가능하다고 판시

107) 이호원, "2016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2020, p.26.
108) 석광현 (2016), p.247.
109) 석광현 (2016), p.247.
110)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111)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112)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10249.
113)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114)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115) 복리약정도 이자제한법의 적용받는다. 제5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 시행 2014. 7. 15.] 법무부

한 판결이 있다.[116] 영국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면서 영국중재법 및 재판법에 따른 법정이자 8%를 지급하도록 명했다.[117] 이에 대해 집행지인 중재지법에 따라 집행결정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다.[118] 반면에 지연손해금은 실체법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중재지법의 적용을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119]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전배상의무는 원칙적으로 한화를 의미한다.[120] 물론, 당사자 간에 다른 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121] 또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중재판정에서 지연손해금을 외화로 지급하라고 명한 사건이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122]

대한상사중재원도 2016년에 국내중재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판정부에게 상당한 재량을 줬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123] 앞서 본 대로 대조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은 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와 국제중재규칙과 더불어 중재법에서 정한 이율은 따로 없는 관계로 실무에서는 국내판정부가 민법이나 상법의 법정이자를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제중재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지연이자를 산정할 때 소촉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쟁점이다. 소촉법 이자율이 2020년부터 12%로 감소했지만 시중금리에 비하면 여전히 높아 이를 적용하면 신청인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피신청인에게는 과다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다.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조기에 완납하도록 촉진하여 신청인이 지연에 따라 입는 손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소촉법) 입법목적은 법정이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는 제소 이후부터라도 이행지체로 인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정이율이 현실 이자율보다 낮은 것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이행이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사실심판결 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124]

116) 서울지방법원 1997.4.10. 선고, 96가합64616.
117) 석광현 (2012), pp.581-2; 임성우, pp.338-9.
118) 이호원,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절차", 「민사소송」, 제24권, 제3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p.28. 기타 논의는 김갑유 외3인 p.313 참조.
119) 임성우, p.339. 특히 해당 판결은 중재법에 지연이자 조항이 추가되기 전에 있었다.
120) 대법원, 1997.5.9. 선고, 96다48688.
121) 대법원, 2005.7.28. 선고, 3003다12083.
122) 대법원, 2001.10.12. 선고, 99다45543.
123) 2016년 이전 국내중재규칙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24)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바49 전원재판부.

하지만, 중재전문가는 대체로 소촉법이 구체적으로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심판을 포함)”이라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일반 소송에 국한되어야 하고 중재는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한다.[125] 중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설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타당하다고 본다. 문언적 해석에 국한하더라도 다른 절차에 유추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면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중재지를 법정지처럼 취급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중재절차에 소촉법상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126] 2016년도 중재법 개정할 때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자는 지적도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127] 또한, “중재법에 지연이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각개의 중재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특례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란 입장도 있다.[128]

소촉법이 한국의 소송정책에 따라 소송을 촉진하기 위한 소송상의 제도로 법정지법인 한국법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129] 대법원도 특별법인 소촉법의 실체법적인 성격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실체적 성격과 절차적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130] 따라서 법정지법이 한국법이어도 소촉법을 적용하지 않고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131] 대법원 판례는 소촉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중재판정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132] 구 소촉법 제13조는 소송절차에만 적용되므로 비송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133] 하급심 판례에서는 판정부가 6%의 지연손해금을 명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집행단계에서 소촉법의 적용을 배척한 사건이 있다.[134]

## 3.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 분석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신 자료인 2019 국내중재판정사례집과 2019 건설중재판정 사례집과 2017년에 발행한 영문중재판정사례집인 KCAB Arbitral Awards을 각각 분석하였다.[135]

125) 석광현, “중재법의 개정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2012, p.581; 석광현 (2017), p.246; 이영석, “우리나라 중재와 판정원금에 대한 이자”, 「법학평론」, 제3권, 2012, pp.154-178.; 김갑유 · 이수현 · 김홍중 · 김준우 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6, p.239.
126)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127) 이호원 (2015), p.375.
128) 이호원 (2020), p.26.
129) 대법원, 1997.5.9. 선고, 95다34385.
130) 이영석, p.165.
131) 대법원, 1997.5.9. 선고 95다34385.
132)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1357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헌법재판소 2000.3.30. 선고 97헌바49 전원재판부 결정.
133) 대법원 1983.8.1. 선고 82마카77.
134)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7. 선고 93가합6770, 27500; 임성우, p.340.
135)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www.kcab.or.kr.

2019 국내중재판정사례집과 2019 건설중재판정 사례집에 각각 34건과 28건이 소개되어 있다. 이 중에 청구를 기각하는 등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면 각각 24건과 27건, 총 51건이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51건을 위주로 분석한 결과가 특기할만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

첫째, 이자율은 상법에 따라 6%를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이자를 부과한 판정이 전체의 69%로 파악되었고, 민법 제397조의 5%를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이자를 부과한 사건은 15%에 불과했고, 약정이율을 부과한 사건은 10%, 특별법의 이율을 적용한 사건은 5%였다. 특히 건설중재사건 중에서 상사법정이율인 6%을 적용한 비율이 82%로 비건설 국내중재사건의 53%보다 월등히 높았다. 아무래도 건설중재사건은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사업자인 등 상법이 정한 상행위에 해당할 때가 높은 결과로 추측한다. 비건설 국내중재사건에서는 민법상 5%를 적용한 비중이 29%였다.

둘째, 국내중재에서는 중재신청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삼은 사건이 45%에 이르렀다. 중재신청서 송달일을 기준일로 삼는 것은 소촉법을 적용한 여부와 상관관계가 없이 상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시작하는 시점은 건설중재와 비건설중재사건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건설중재사건에서는 57%가 지급기일부터 43%가 중재신청일 송달일부터 이자를 부과하도록 명했으나, 비건설중재사건은 94%가 지급기일부터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셋째, 소촉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이자를 판정일 혹은 중재신청서 송달일 이후에 적용한 사례가 67%로 상당히 많았다.[136] 중재를 소송의 일환으로 보고 민사소송과 같이 소촉법을 적용하는 관례가 남아있다고 평가된다. 반면에 소촉법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한 사건도 13%나 집계되었다. 판정일이나 중재신청서 송달일 이후에 적용된 지연이자로는 상법상 6%와 민법상 5%가 각각 2건 있었으며, 그 밖에 다른 이율을 정한 사건이 2건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영문중재사례집에서 이자 부분이 명시된 사건 중에서 청구를 기각한 사건을 제외하면 8건뿐이어서 통계의 유의미성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8건 모두 중재지는 서울이었으며, 명시하지 한 건을 제외하고 계약준거법은 모두 대한민국법이었다. 8건 중 6건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상법상 이자에 준하는 6%를 적용하였으며, 3건이 소촉법 혹은 이에 준하는 이율을 적용한 반면 3건은 소촉법 적용을 부정하였다. 이자율 산정 시기는 4건은 지급기일로부터, 2건은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로 시작하여 완제일 혹은 판정일까지로 정했다.

136) 2012년도에 대한상사중재원 익명의 임원에 따르면 소촉법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반반이라고 확인되었다. 이영석, p.157.

## Ⅵ. 맺으며

본 논문에서는 국제중재사건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심층적인 소개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제중재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라 구제수단으로 금전채무의 지급을 명한 사건에서 흔히 포함되는 지연이자는 통일된 기준이나 관행이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륙법, 보통법 등 법체계와 관계없이 국제중재판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지연이자를 판정하고 있으며 국제상사중재와 국제투자중재도 통일된 관행이 없다. 판정 전과 후 이자, 다양한 이자의 종류와 산출 방법, 단리와 복리의 부과 여부, 이자의 준거법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정금액이 커질수록 지연손해금은 최종 배상금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다. 대한민국법이 준거법, 내지는 서울이 중재지로 채택될 수 있으며, 외국 준거법, 국제 중재기관이나 해외 중재지에서 중재절차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중재인으로 구성된 판정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국제적인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이해가 국제중재에서 요구되고 있다.

# 참고문헌

고학수, “국제투자분쟁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법경제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2015, pp.21-48.

권영준, “법정이율 변동제”, 「비교사법」, 제20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pp.51-90.

김갑유 · 이수현 · 김홍중 · 김준우 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6.

석광현,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의 외국중재판의 승인 및 집행”,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2001.

_____, “중재법의 개정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2012, pp.533-588.

_____, “2016년 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법학연구」, 제53권, 한국법학회, 2017, pp.213-268.

이강빈, “국제상사중재 실무상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중재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1999, pp.115-137.

이무원, “이슬람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1996, pp.221-246.

이병문 · 안현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이자청구권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9, pp.97-118.

이영석, “우리나라 중재와 판정원금에 대한 이자”, 「법학평론」, 제3권, 2012, pp.154-178.

이호원, “중재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민사소송」, 제19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5, pp.353-392.

_____, “2016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중재 학회, 2020, pp.3-37.

_____,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절차”, 「민사소송」, 제24권, 제3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pp.1-36.

임성우, 「국제중재」, 박영사, 2016.

판례

대법원, 1983. 8. 1. 선고, 82마카77.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대법원, 2005. 7. 28. 선고, 3003다1208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249.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바49 전원재판부.

Blackaby, N.,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5th ed., 2009.

Born, Ga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 Kluwer, 2004.

Comair-Obeid, Nayla, "Recovery of Damages for Breach of an Obligation of Payment" in Yves Derains and Richard Kreindler (eds), *Evaluation of Dama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Pari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6, p.133.

Dow, James, "The Guide to Dama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Business Research*, 3th ed., 2018, pp.301-330.

*Fouchard Gaillard Goldma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Gaillard and Savage 편저, Kluwer, 1999.

Gotanda, John, "Award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0 No.1, 1996.

Gotanda, John, "Compound Interest in International Disputes", *Oxford U Comparative L Forum 1*, 2004, Retrieved January 31, 2020, from ouclf.law.ox.ac.uk.

Gotanda, John, "Supplemental Damage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3.4, 1988.

Hjerner, Lars, "Awarding Interest in Swedish Arbitration", *Swedish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1985, pp.29-37

Hunter, Martin · Triebel, Volker, "Award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ome Observations Based 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Laws of England and Germany",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6 No.1, 1989, pp.7–24.

Kantor, Mark, "Fifty Billion Dollars; The Yukos Damages Awards", *The Journal of Dama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 No.1, 2015, p.131.

Maniatis, M. Alexis · Dorobantu, Florin · Nunez, Fabricio, "A Framework For Interest Award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1, 2018, p.821.

Marboe, Irmgard, *Calculation of Compensation and Damag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nd ed., Oxford International Arbitration Se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327 - 406.

Merkin, Robert · Hjalmarsson, Johanna, *Singapore Arbitration Legislation: Annotated*, 2nd ed., Informa Law, 2016.

Mogi, Teppei · Hosokawa, Aiko · Inaba, Wakako, "Japan Delos Guide to Arbitration Places", 2020.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Committee of the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Award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eview of Internatioanl Arbitration, Vol.28 No.1, 2017.

Palmer, Dustin K., "Should Prejudgment Interest Be a Matter of Procedural or Substantive Law in Choice-of-Law Disputes?",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69 No.2, 2002, pp.705-728.

PWC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Damages award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Study of ICC Awards", 2020.

Reisberg, Steven · Pauley, Kristin, "An Arbitrator's Authority to Award Interest on An Award Until "Date of Payment": Problems and Limitations",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Vol.16 No.1, 2013.

Ripinsky, Sergey · Williams, Kevin, *Damag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8, pp.363-91.

Secomb, Matthew,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International Arbitration Ser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Sénéchal, Thierry · Gotanda, John, "Interest as Damages",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47, 2009, p.497.

Seppälä, Christopher R., "Post-award interest", *Post-hearing Issu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Devin Bray, Heather L. Bray 편저, Juris, 2013.

Wetter, J. Gillis, "Interest as an Element of Damages in the Arbitral Process",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986.

## 판례

ABC International Bank PLC et autres v. Societe BAII recouvrement, 2004 Rev. arb. 738 (French Cour de cassation civ. 1e), 30 June 2004.

Banque Arabe et Internationale d'Investissement (BAII) v. The Inter-Arab Investment Guarantee Corporation (IAIGC),; Cass. Civ. 1st, 30 June 2004, Appeal No. 01-10.269, 01-11.718, Bull. Civ. No. 2004, I 189.

Bayer Cropscience AG v. Dow Agrosciences LLC, 680 Fed App'x 985, 1000, Fed. Cir. 2017.

Far East Holdings Bhd & Anor v. Majlis Ugama Islam dan Adat Resam Melayu Pahang and other appeals, 1 MLJ 1, 2018.

Gemplus, SA, et al v. The United Mexican States, ICSID Case Nos ARB(AF)/04/3 and ARB (AF)/04/4), Award, June 16, 2010

Grove-Skanska v. Lockheed Aircraft International AG., Award No. 3903 ICC, 1981.

Inter Maritime Management S.A. v. Russin et Vecchi, Swiss Fed. Trib., Jan. 9, 1995, 10 INT'L ARB. REP. D1, D6 (Sept. 1995); XXII Y.B. COM. ARB. 789 (1997).

Iro-Holding v. Setilex, CA Paris, 1983 REV. ARB. 497, June 9, 1983.

McCollough & Co Inc v Ministry of Post Telegraph and Telephone, 11 Iran–US CTR 3, 1986.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and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6/11, October 5, 2012

OLG Hamburg, 6 U 71/88, 26 January 1989.

Parfums Stern France v. CFFD, Comp. CA Paris, 1991 REV. ARB. 673, Apr. 19, 1991.

Thyssen Stahlunion v. Maaden, 1995 REV. ARB. 448 (Paris Cour d'Appel), 6 April 1995.

Tianjin Jishengtai Investment Consulting Partnership Enterprise v. Huang, FCA 767, 2020.

Total Chine v. E.M.H., CA Paris, 1989 REV. ARB. 328, June 28, 1988.

Walker v. Rowe, 1 Lloyd's Rep 116, 2001.

Westdeutsche Landesbank Girozentrale v. Islington London Borough Council [1996] AC 669

# ABSTRACT

## A Study of Delay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Joongi Kim*

Award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main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reas for tribunals and parties given the myriad of issues that arise.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an overview of how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grant delay interest. It reviews the various issues that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face concerning pre-award and post-award interest, determining the appropriate interest rate, surrounding simple or compound interest, and the complex issue of choice of law. A comparative context is provided by surveying the laws of major jurisdictions from both the common law and civil law and the regulations of leading arbitral institutions. It concludes with a review of the law, jurisprudence, and practice in Korea related to delay interest and how Korean tribunals under the KCAB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have determined delay interest in recent years.

**Key Words** : delay interest, simple and compound interest, statutory interest, KCAB

* Professor of Law, Yonsei Law School.